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및 관리시설 부지의 조사·선정 등에 필요한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0843호, 2025. 3. 25. 공포, 9. 26. 시행)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기능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로 이관하면서 해당 사무를 수행하던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 및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로 이체하는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9. 00 공포, 9. 26.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통상정책국 기후에너지 통상과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5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7년 9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9. 11. ~ 9. 1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음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17호까지 중 “방사성 폐기물”을 각각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로 한다.

제9장의2의 제목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957”을 “955”로 하고, 일반직 계 “946”을 “944”로 하며,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통계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보건사무관·사서사무관·기상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의무사무관·약무사무관·간호사무관·항공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부감서관·공업연구관·학예연구관·편사연구관·농업연구관·임업연구관·해양수산연구관·기상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276”을 “275”로, 행정주사·공업주사·통계주사·환경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사서주사·기상주사·사회복지주사·감사주사·농업주사·임업주사·수의주사·해양수산주사·보건주사·의료기술주사·식품위생주사·약무주사·간호주사·항공주사·방재안전주사·공업연구사·학예연구사·편사연구사·

농업연구사·임업연구사·해양수산연구사·기상연구사·보건연구사·환경연구사 또는 시설연구사 “189”를 “188”로 한다.

별표 3의2 중 총계 “957”을 “955”로 하고, 일반직 계 “946”을 “944”로 하며,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통계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보건사무관·사서사무관·기상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의무사무관·약무사무관·간호사무관·항공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부감사관·공업연구관·학예연구관·편사연구관·농업연구관·임업연구관·해양수산연구관·기상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297”을 “296”으로, 행정주사·공업주사·통계주사·환경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사서주사·기상주사·사회복지주사·감사주사·농업주사·임업주사·수의주사·해양수산주사·보건주사·의료기술주사·식품위생주사·약무주사·간호주사·항공주사·방재안전주사·공업연구사·학예연구사·편사연구사·농업연구사·임업연구사·해양수산연구사·기상연구사·보건연구사·환경연구사 또는 시설연구사 “176”을 “175”로 한다.

별표 5 11)의 평가기간란 중 “2025년 9월 30일”을 “2027년 9월 30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5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의3(원전산업정책국) ① ~ ④ (생 략) ⑤ 원전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u>방사성폐기물</u> 관리 기본계획 의 수립 · 시행 2. <u>방사성폐기물</u> 에 관한 법령 · 제도의 연구 · 조사 · 개선 3. <u>방사성폐기물</u> 관리 기본계획 의 수립을 위한 사회적 공론 화 및 홍보 지원 4. <u>방사성폐기물</u> 관리 시행계획 의 승인 · 변경 5. · 6. (생 략) 7. <u>방사성폐기물</u> 에 대한 교육 및 전문가 양성 8. <u>방사성폐기물</u> 의 저장 · 수송 · 인도 · 인수 · 비용 산정 등 에 관한 법령의 제 · 개정 및 정책의 수립 · 시행 9. <u>방사성폐기물</u> 관리시설 유치 지역의 지원 10. <u>방사성폐기물</u> 관리시설 유 치지역 지원 관련 위원회의	제10조의3(원전산업정책국)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u>중 · 저준위 방사성폐기물</u> -- ----- 2. <u>중 · 저준위 방사성폐기물</u> -- ----- 3. <u>중 · 저준위 방사성폐기물</u> -- ----- ----- 4. <u>중 · 저준위 방사성폐기물</u> -- ----- 5. · 6. (현행과 같음) 7. <u>중 · 저준위 방사성폐기물</u> -- ----- 8. <u>중 · 저준위 방사성폐기물</u> -- ----- ----- ----- 9. <u>중 · 저준위 방사성폐기물</u> -- ----- 10. <u>중 · 저준위 방사성폐기물</u> - -----

구성·운영 및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 -----
11. <u>방사성폐기물</u> 관리시설 설치 후보지역의 부지 조사 및 부지선정 관련 위원회의 구성·운영	11. <u>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u> ----- ----- -----
12. 원자력발전소 외 <u>방사성폐기물</u> 의 수거·운반·처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2. ----- <u>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u> ----- -----
13. <u>방사성폐기물</u> 관련 연구개발	13. <u>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u> -----
14. <u>방사성폐기물</u> 관리시설의 입지·건설·운영·사후관리 의 지원	14. <u>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u> ----- -----
15. <u>방사성폐기물</u> 관리시설의 안전성 검증 등에 관한 사항	15. <u>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u> -----
16. <u>방사성폐기물</u> 관련 대외 협력	16. <u>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u> -----
17. 그 밖에 <u>방사성폐기물</u> 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17. ----- <u>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u> -----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제9장의2 <u>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u>	제9장의2 <u>평가대상 조직</u>

신 · 구정원대비표

[별표 3]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957</u>	<u>955</u>	-2
·	·	·	
·	·	·	
일반직 계	<u>946</u>	<u>944</u>	-2
·	·	·	
·	·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통계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 관 · 방송통신사무관 · 보 건사무관 · 사서사무관 · 기상사무관 · 사회복지사 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 사무관 · 수의사무관 · 의 료기술사무관 · 식품위생 사무관 · 의무사무관 · 약 무사무관 · 간호사무관 · 항공사무관 · 방재안전사 무관 · 부감사관 · 공업연 구관 · 학예연구관 · 편사			

연구관 · 농업연구관 · 임 업연구관 · 해양수산연구 관 · 기상연구관 · 보건연 구관 · 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u>276</u>	<u>275</u>	-1
·	·	·	
·	·	·	
행정주사 · 공업주사 · 통계 주사 · 환경주사 · 시설주 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 주사 · 사서주사 · 기상주 사 · 사회복지주사 · 감사 주사 · 농업주사 · 임업주 사 · 수의주사 · 해양수산 주사 · 보건주사 · 의료기 술주사 · 식품위생주사 · 약무주사 · 간호주사 · 향 공주사 · 방재안전주사 · 공업연구사 · 학예연구사 · 편사연구사 · 농업연구 사 · 임업연구사 · 해양수 산연구사 · 기상연구사 · 보건연구사 · 환경연구사 또는 시설연구사	<u>189</u>	<u>188</u>	-1
·	·	·	



[별표 3의2]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957</u>	<u>955</u>	-2
·	·	·	
·	·	·	
일반직 계	<u>946</u>	<u>944</u>	-2
·	·	·	
·	·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통계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 관 · 방송통신사무관 · 보 건사무관 · 사서사무관 · 기상사무관 · 사회복지사 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 사무관 · 수의사무관 · 의 료기술사무관 · 식품위생 사무관 · 의무사무관 · 약 무사무관 · 간호사무관 · 항공사무관 · 방재안전사 무관 · 부감사관 · 공업연 구관 · 학예연구관 · 편사 연구관 · 농업연구관 · 임			

업연구관 · 해양수산연구 관 · 기상연구관 · 보건연 구관 · 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 ·	<u>297</u> · ·	<u>296</u> · ·	-1
행정주사 · 공업주사 · 통계 주사 · 환경주사 · 시설주 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 주사 · 사서주사 · 기상주 사 · 사회복지주사 · 감사 주사 · 농업주사 · 임업주 사 · 수의주사 · 해양수산 주사 · 보건주사 · 의료기 술주사 · 식품위생주사 · 약무주사 · 간호주사 · 항 공주사 · 방재안전주사 · 공업연구사 · 학예연구사 · 편사연구사 · 농업연구 사 · 임업연구사 · 해양수 산연구사 · 기상연구사 · 보건연구사 · 환경연구사 또는 시설연구사 · ·	<u>176</u> · ·	<u>175</u> · ·	-1